

2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제5조제1항)

제5조(부정청탁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벌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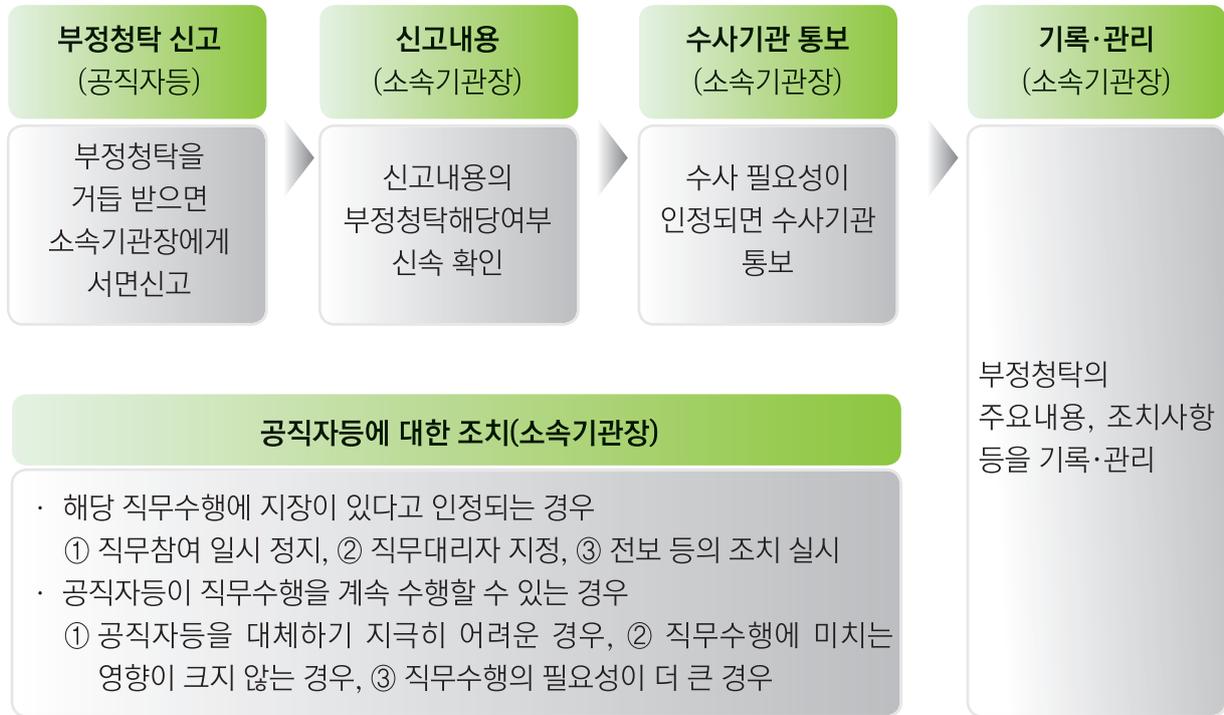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위반시 제재

행위 주체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유 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 인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건전한 의사소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사유(제7조제5항)
 -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는 직무 수행 가능